

#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

변화하는 복지환경에서 노후화되는 복지시설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現 기능보강사업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함

## I 추진근거 및 배경

### □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, 시설유형별 개별 관계법(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 등)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

### □ 추진배경

- 관련 법령 개정, 시설 노후화 등 변화하는 복지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現 기능보강사업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 필요
- 기능보강사업 관련 시의회, 감사위원회 등의 지적사항 및 요청사항 반영
  - 관련서류 부실, 현장감독 및 사업비 집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 미흡
  - 당해연도 요청 사업의 경우 검토시 장기간 소요, 공사발주 지연·집행 저조 등
- 실무 추진근거로 활용중인 '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' 등 보완 필요
  -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('04), 공통업무 처리기준 수립('09), 공사매뉴얼 발간('17) 등

#### [ 기능보강사업 업무 프로세스 구축 주요연혁 ]

실시연도	추진내용	추진기관	비고
2004년	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	서울시복지재단	신청내용, 예산 등 타당성 심사
2009년	공통업무 처리기준 수립	서울시(복지정책실)	사업대상 선정기준, 발주주체 등
2017년	기능보강사업 공사매뉴얼 발간	서울시복지재단	계약방법, 필요서류 등

➔ 복지 현장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수립 추진

## II 개선방향

비전

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복지시설 환경 구현

기능보강사업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

추진  
과제

### 1.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

-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(자치구→ 복지시설)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
- 복지시설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 실행 전 이행절차 강화

### 2. 공사 추진시 자치구의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

- 공사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(발주→시행→준공), 사업관리 책임 부여
- 자치구에 감리 관련예산 배정·관련전문가 연계 지원, 감리활동 전문성 확보

### 3. 복지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사업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

- 복지재단 내 전담인력 증원(6명→9명), 타당성검토 및 지원업무까지 수행
- 업무매뉴얼 개정, 실무자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

### 4.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

- 임대시설 지원 기준에 대한 명시화, 안전 확보 등 최우선 지원
- 복지시설 관리 전담조직(팀) 신설, 상시 안전관리 등 총괄 추진 **장기과제**

### Ⅲ 과제별 추진내용

#### 1.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

##### ①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

##### □ 현황 및 실태

- **사업비 1억원 이상**(區 발주 원칙) 추진 규모는 **전체 사업의 10%** 수준  
- '18년 총 511건중 1억원 이상 51건(10%), 1억원 미만은 460건(90%)

##### ■ 1억 원 이상 기능보강사업 현황('18)

- 총 51건(11,483백만원) ※ 기능보강사업 총 집행실적('18) : 총511건, 22,350백만원

연번	시설유형	건수	예산				
			합계	국비	시비	구비	자부담
합 계		51	11,482,909	1,148,798	9,042,688	923,222	368,201
1	종합사회복지관	10	1,570,717	-	1,024,729	496,844	49,144
2	노인복지시설	26	5,424,864	273,291	4,837,145	236,578	77,850
3	장애인복지시설	10	3,305,233	655,507	2,218,719	189,800	241,207
4	노숙인 시설	5	1,182,095	220,000	962,095	-	-

- **1억 원 이상 공사 발주는 자치구 직접 발주를 원칙으로 시행**  
- 공통업무 지침('09년)에 의거,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은 區 소관부서 발주  
- 사업 신청(사전검토) 및 공사 발주시 區 건축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참여 독려

##### ※ 사업비 규모별 발주 절차

① 자치구 발주 :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·증축/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사업

##### 〈사업비 지원 신청 : 시설〉

- 복지시설 제출
-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등 산출

##### 〈사업신청서 검토 : 자치구〉

- 區 시설/건축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

##### 〈설계 및 공사 발주 : 자치구〉

- 區 소관부서별/구별 통합 발주
- 발주시 건축직 공무원 참여토록 관계부서 협조

② 복지시설 발주 : 區 발주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, 차량구매, 물품 제조 및 구매 등

##### 〈계약방법 결정 : 시설〉

- 관련법령에 의거, 공개·제한·지명경쟁, 수의계약 등 추진

##### 〈공사 발주 : 시설〉

- 나라장터(g2b) 활용하여 공고 및 계약체결

##### 〈물품 제작·구매 : 시설〉

- 조달구매 원칙
- 조달구매 불가시 시장조사 등 바탕으로 구매

## □ 문제점

- **區 발주 시 공사업체는 복지시설이 요구하는 필요사항 반영 의지 부족**
  - 문제상황 발생시 시설-업체간 갈등, 현장에서의 의견 협의· 문제해결 어려움
- **市 교부 예산 성격상 區 직접 집행 불가, 인력 부족 등으로 區 실행 기피**
  - 공사에 예산이 민간자본보조, 민간위탁금 형태로 교부되어 區 직접 집행 어려움
  -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區가 실행에 소극적, 시설에서 사업 쪼개기 신청 발생

## □ 개선내용

- **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 공사 발주기관 변경 : 區 → 복지시설**
    - (시설) 공사범위·규모, 계약 방법 등 포함한 계획서 작성·區에 제출, 발주 추진
    - (區) 시설이 제출한 발주계획서 검토(기술직 공무원 등 참여), 검토결과 市 제출
      - ※ 법령, 상위기관 지침(보건복지부 등) 상 시설 발주 불가한 경우 자치구 발주 유지
- 〈표1〉 공사 발주주체 관련 규정 현황('19)

연번	시설유형	예산유형	규정내용(현행)	규정근거
1	종합사회복지관	시/구비	1억 원 이상 공사는 자치구	市 자체지침 ('09)
2	노인복지시설	국/시/구비		
3	장애인복지시설	국/시/구비		
4	노숙인 시설	국/시비		

### ■ 기능보강사업 설계비 지원(市)

- 대상 : 복합공사·대규모 공사 등 2개년 이상에 걸쳐 추진이 필요한(가능한) 사업
- 내용 : 1차 기초설계비 - 2차 공사비
- 방법 :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거, 사업 선정시 市는 설계비/공사비 지원

- **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·증축 공사, 시설 발주 곤란시 區 발주**
  -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,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  - 복지시설, 자치구간 협의 후 區 발주 공사로 추진 가능(발주기관 결정사항 市에 통보)

\* 일부 자치구는 전담 공무원(시간선택제 임기제)을 채용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중임

### ❖ 기능보강사업 전담 공무원 채용 사례(강동구)

- 채용분야 및 인원 : 장애인복지 시설관리담당(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)
- 주요업무 :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,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의,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리

## 2 공사 실행 관련 이행절차 강화

### □ 현황 및 실태

- 사업 타당성에 대한 **區 사전 검토서 제출 외 공사 실행 관련 절차 부재**
  - 복지시설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자치구가 검토의견서 첨부 후 市 제출
- **법인·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, 타당성 검토 결과 등 최소 수준 자료 등록**
  - 사업 신청서(시설), 타당성 사전검토(자치구), 타당성 검토결과(복지재단)

### □ 개선내용

- 1억 원 이상 시설 발주 공사에 대한 **이행절차 강화로 區의 책임성 강화**
  - 발주계획 검토, 현장 관리감독(감리), 사업 정산 등 행정절차 이행, 市에 보고
  - 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시 감사·회계분야 인력(자체 또는 민간) 합동점검 의무화

\* 일부 區(노원 등)는 공사 충실성 제고 위해 계약 관련 조례에 원가심사 추진 규정 명시

-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관련 **복지시설 담당자 사전교육 참석 의무화**
  - 공사 실행 전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개최, 필수 참석
  - ※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담당자가 실무교육 불참시 공사비 배부 제한 검토

#### ❖ 기능보강사업 관련 자치구 원가심사 추진 사례 (노원구, 도봉구)

- 추진방법 : 자치법규(조례/규칙) 제정하여 근거 마련, 區 소관부서가 원가심사 실시
- 법규내용
  - ① 서울시 노원구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: (제2조 발주부서) 시·구비가 보조되는 법인·단체 및 기관, (제3조 대상사업)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
  - ② 서울시 도봉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: (제2조 발주부서) 개별 법령 등에 따른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보조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, (제3조 대상사업) 3천만원 이상의 건설·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수리공사

#### ■ 서울시 계약 원가심사 기준(계약심사과)

- ① 심사대상 : 자치구(시비 재배정사업, 국·시비 보조사업으로 제한)
- ② 심사금액 : 공사(추정금액 5억 원 이상), 물품 제조·구매(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)

- **법인·시설관리시스템 내 관련서류 등록/검토 기능 추가로 관리체계 강화**
    - 시설, 복지재단, 市/區, 민간전문가(컨설팅단) 등 역할에 따른 실행권한 부여
      - (시설) 1억 원 이상 공사 관련 필수서류(공사원가계산서, 현장설명서 등) 의무 등록
      - (자치구/재단) 사업타당성 검토의견 및 결과 기재, 공사 단계별 필수서류 확인
- ※ '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여 관심 및 실행력 제고

\* 법인·시설관리시스템 통한 사업 전 과정 시행/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기적 추진

❖ **법인·시설관리시스템 기관별 역할 및 권한(안)**

구 분	ID 관리	사용권한
복지시설	사업 담당자 지정 및 권한 설정	· 사업관련 서류 등록·관리
복지재단	사업 관리자 지정 및 권한설정	· 시설 신청서류 열람 및 확인 · 사업타당성 검토의견, 보완사항 등 기재
시·자치구	사업 담당자 지정 및 권한설정	· (區)사업타당성 사전검토 의견 등록 · (市) 신청서류, 검토 의견 등 사업 관련 자료 열람·확인
민간전문가 (필요시)	사업 관계자 권한설정	· 시설 사업관련 서류 열람 및 확인 · 검토의견 기재



< 서울시 법인·시설관리시스템 화면 >

## 2. 자치구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

### □ 현황 및 실태

- 시설 발주 공사의 경우 자치구 현장 감독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 부재
  - 중앙정부 및 市 관련 지침 부재, 인력 부족 등으로 세밀한 감독활동 미흡
  - 시설담당자는 현장감독관, 공사감독관은 별도 지정하여 착공~준공까지 현장 관리

\* 일부 시설발주 공사는 사업예산에 감리 비용이 포함되어 외부기관에 의뢰·시행

- 자치구 발주 공사는 준공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현장 감독활동 추진
  - 일반적으로 발주 공무원이 현장감독관,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(건축부서 협조 등)
  - ※ 각 부서별 ‘기능보강사업 집행시 유의사항’ 등에 사업비 집행, 현장 감독에 대한 사항 개략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설명회 개최시 안내 또는 공문 발송으로 독려

### □ 개선내용

- 공사 추진 단계별 區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(발주 → 시행 → 준공)
  - 발주 공무원 외 기술직 공무원·관련 전문가 등 자격있는 자 현장관리자로 지정·관리
  - 발주~준공 과정시 발생한 미흡사항, 현장 안전문제 등 확인 및 보완조치 요청
- 區에 감리 관련 예산 배정 및 관련 민간 전문가 연계 지원
  - 1억 원 이상 선정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감리 예산만 별도 자치구에 배정
    - 관련 지침에 근거, 대가요율 적용 예산 배정(1억 원의 경우 2.11%인 220만원 수준)
  - 건축, 전기, 방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정보 區에 제공(市 안전관리자문단 등)
  - 기타 중·소규모 공사에 대해 區 필요시 전문가와 연계토록 지원(구비 자체 편성)

■ 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 운영현황('19년 기준)

구 분	위촉인원	구성분야, 주요활동	담당부서
市 안전관리자문단	178명	- 전기, 건설안전, 방재 등 분야별 전문가 - 시설물 안전점검, 공사현장 점검 등 - 활동수당 280,000원(회당)	안전총괄과
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	500여명(회원)	- 건축사사무소 등 13개 회원사 - 노후화된 복지시설 순회점검, 컨설팅 등	지역돌봄복지과

### 3. 복지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사업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

#### 1 복지재단 전담인력 확충

##### □ 현황 및 실태

- 심사평가팀 내 **전문인력 6명**(정원) 배치, **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 수행**
  - 3종 복지관(종합·장애인·노인) 및 기타시설 타당성 연간 746건 검토('18)
  - 노숙인 시설 타당성 검토 및 상담·컨설팅 등 지원 업무는 인력부족으로 미실시

##### ■ 기능보강사업 인력배치 현황('19)

구 분	수행업무	자격사항
차장 1명 (정규직)	- 타당성검토 총괄 - 장애인복지시설, 노인국고보조시설 담당 (평가지표 개발, 검토계획서 작성, 검토회의 준비 등)	관련자격증 소지 (건축사, 건축기사)
대리 1명 (정규직)	- 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 (평가지표 개발, 검토계획서 작성, 검토회의 준비 등)	
전문위원 4명 (기간제근로자)	- 건축, 기계설비, 전기설비 분야 등 타당성 검토 - 기능보강사업 전산시스템 관리	관련자격증 소지 (건축설비산업기사, 소방기술인정자격 등)

##### □ 개선내용

- **전담인력 3명 증원**(6명 → 9명), **타당성 검토 외 지원업무까지 수행 확대**
  - 타당성 검토대상 확대(노숙인 시설 추가), 검토량 증대(연간 700건 → 950여건)
  - 확충된 인력으로 실무자 교육·컨설팅 실시, 공사매뉴얼 개선 등 지원업무 수행

구 분	현 재	확충(안)	증 감	업무 내용
합 계	6인	9인	3인	-
정규직	2인 (건축 2)	4인 (건축2, 기계1, 전기1)	2인 (기계 1, 계약 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타당성 검토(추경/긴급, 노숙인 시설)(확대)</li> <li>· 시설유형별 검토지표 개발 및 보완(확대)</li> <li>· 기술검토/공사매뉴얼 개발 및 보완(신설)</li> <li>· 실무 교육·상담 실시 및 지원(신설)</li> <li>· 전산시스템 관리 및 개선(확대)</li> <li>· 사업관리 (검토 계획, 결과 보고)</li> <li>· 기간제근로자 관리, 현장실사 및 보고서 작성</li> </ul>
기간제근로자	4인 (건축,기계,전기)	5인 (건축, 기계, 전기)	1인 (건축 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장실사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</li> </ul>

\* 장기적으로 재단 내 기능보강사업팀 신설, 시설 안전관리와 연계한 체계적 보강사업 추진



## 2 사업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

### 실무자 교육 및 상담 강화

#### □ 현황 및 실태

-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외 **별도 실무교육 미 실시**
  - 매년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후 설명회 개최(2~4월), 제출서류·유의사항 등 안내
- 사업인력 대부분이 **시설 공사, 계약 절차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**
  - 시설 및 區 담당자 다수가 복지분야 전문가, 시설별 사업 횟수 연 1회 수준

#### □ 개선내용

-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기능보강사업 **실무교육**(정규, 수시) **개최**
  - 복지재단 내 교육일정·과정 운영, 선정사업 대상으로 공사 착수전까지 실시
  - ‘원가계산 실무교육(계약심사과)’ 등 유사교육 연계, 수요에 따라 분야별 교육
  - ※ 대상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실무교육 불참시 사업비 배부 제한 검토

#### [ 원가계산 실무교육 개요(市 계약심사과) ]

- 교육대상 : 시청, 투자·출연기관, 자치구 발주담당자
- 교육유형 :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방문 교육
- 교육분야 : 토목, 건축, 전기, 구매, 용역 등
- 교육방법 : 강의, 워크숍, 컨설팅(부서 단위)



- 추진 단계별 **실무자 대상 1:1**(또는 1:소수) **형태로 상담 제공**
  - 복지재단 내 상담 전담인력 배치, 단계별 추진과정 고려 상시 운영
  - 적정공사 내용, 공사비 산출 등에 대한 기초 상담(유선 및 방문 상담)

\* 필요시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컨설팅단 구성·운영, 자문 추진



## ② 업무매뉴얼 개정 등 업무처리 지침 보완

### 현황 및 실태

- '09년 「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」 수립, 실행
  - 市 복지정책실 수립, 지원대상 선정기준, 발주주체, 신청시 유의사항 등 수록
- '17년 「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공사 업무매뉴얼」 제작, 활용
  - 市 복지재단(연구개발팀) 집필·제작, 구비서류, 계약방법 결정·계약절차 등 수록

### 문제점

- **관련법령 개정, 시설환경 변화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 지침 미반영**
  - 지원기준(시립/구립/법인시설 기준분담률), 재무회계규칙 상 계약기준 등

### 개선내용

- **현장의견 및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, 각 부서별 사업설명회 자료 배포**
  - '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에 의거, 부서별 세부자료 작성·안내
  - 공통사항(공사비에 따른 발주주체, 업무처리절차 등), 시설 유형별 선정기준 등
- **시설 공사 업무매뉴얼 개정 및 관련기관 배포 추진(복지재단)**
  - 단계별 구비서류 및 서식, 계약절차, 기관별 확인사항 등 변경사항 수정·보완
  - 기능보강사업 관련 부서 총괄 추진, 내·외부 전문가 활용하여 매뉴얼 점검

\* 매뉴얼 정기 업데이트 추진, 매뉴얼 개정 후 실무자 대상 변경사항 안내·교육 실시 병행

## 5.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

### □ 현황 및 실태

- **임대시설 기능보강은 부서별 지침 및 재단 검토결과에 의거, 제한적 지원**
  - 임대시설 지원 관련 법률 미비, 민법상 규정·사적 이익 등을 사유로 원칙적 제외
    - ※ 민법 제316조(원상회복의무)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.
  - 안전,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한해 복지재단(종합검토위원회 동의) 타당성 검토·지원

#### ■ 복지시설 지원 대상 관련 규정 (임대시설 지원 제한사항 포함)

구 분	시설유형	규정내용
사회복지사업법	시설 전반	별도 규정 없음 ※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민간의 시설 설치·운영, 휴지, 재개, 폐지 신고에 대한 권한을 줌
市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(제2조 정의)	시설 전반	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복지 관련 시설,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
보건복지부 (국고보조금 신청서식)	장애인거주시설	유형과 관계없이 시설운영주체의 소유권이 아닌 <b>전세 등 임대 시설은 신청에서 제외</b>
市 지역돌봄복지과 (사업설명회)	종합사회복지관	임대건물일 경우 지원 범위가 <b>매우 제한적</b>

- **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정부·市·區·시설 간 협력하여 안전점검 위주 추진**
  - 시설 자체 점검, 정부·지자체 합동 점검, 민간기관(한국시설안전공단 등) 점검 등
  - 정기(연 1~2회) 및 수시(태풍발생시 등) 점검 실시, 결과에 따라 개보수 등 요구

#### [ 안전관리(안전점검) 실시 개요]

- 점검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(시설의 안전점검) 등
- 점검기관 및 시기
  - ① 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: 정기점검(매년 2회), 수시점검(필요시)
  - ② 지자체(市, 區) 안전점검 : 하·동절기 등 취약시기(복지부 점검계획에 의거)
  - ③ 합동(정부·지자체·전문가 등) 안전점검 : 하·동절기, 태풍발생시 등(연 1회)
  - ④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(소규모 취약시설) : 시설장 또는 지자체 신청시
  - ⑤ 민간전문가(소규모 취약시설) 연계 전문적 안전점검 : 20년 이상 노후 복지관 등

## □ 문제점

- 임대시설은 관련 법률 간 상충 요소가 있어 지원에 대한 책임소재 우려
  - 민법에 의거 원상회복의무의 책임소재, 비용분담 등에서 소유주와 분쟁 발생 위험
  - 일부 시설장은 복구 비용, 임대기간 보장에 대한 미확실성 등으로 공사 지원 기피
- 복지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조직(컨트롤타워) 부재
  - 부서별 기능보강사업 담당자(1명) 외 별도 인력 없어 안전관리 업무 수행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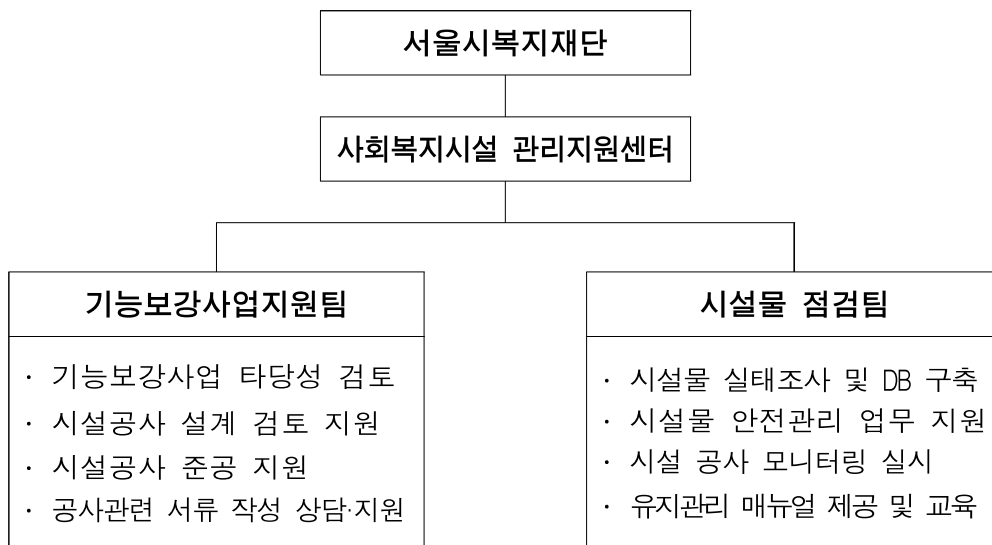
## □ 개선내용

- 임대시설 지원은 현행 수준의 검토기준 명시화, 안전확보 등 최우선 지원
  - 지원사유, 소유주 동의 등 선행조건은 매뉴얼(복지재단) 등에 표기
  - 복지시설측 요청시 공사가 아닌 관련 장비 구매 지원 여부 병행 검토, 실시

지원사유	소유주 동의 여부	비 고
안전확보,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	소유주 동의(서면)	임대기간 조건은 타당성 검토시 변경 가능

※ 선행조건 충족시에도 복지재단 사업타당성 검토 통해 지원여부 최종 확정

- 복지시설 관리 전담조직 신설,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총괄 추진 장기과제
    - 복지재단 내 「복지시설 관리지원센터(가칭)」를 신설·운영, 시설물 실태조사 및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, 기능보강사업 컨설팅/공사 집행 점검 지원 등
- ※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센터 조직도(안)



# IV

## 추진일정

과 제 명	'19. 3분기	'19. 4분기	'20. 1분기
<b>1. 복지시설의 주도성 및 책임성 제고</b>			
①-1.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			
①-2. 공사 실행 관련 이행절차 강화			
- 區 행정절차 이행, 사업담당자 실무교육 실시			
-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능 추가, 운영			
<b>2. 자치구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</b>			
- 공사 감리 관련 예산 배정			
<b>3. 재단 전담인력 확충 및 수행인력 지원체계 구축</b>			
③-1. 복지재단 내 전담인력 확충 ※ 인력 3인 중 업무매뉴얼 제작/상담 지원 인력 1인은 방침수립 후 채용 절차 진행			
③-2. 실무자 대상 교육/상담 강화			
③-3. 사업 공통지침/업무매뉴얼 개정, 배포			
<b>5. 복지시설 안전점검 활동 및 관리 강화</b>			